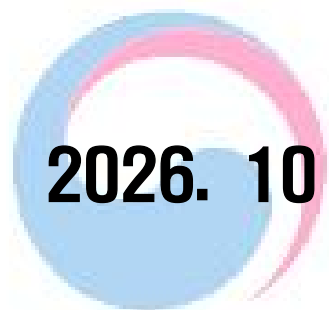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



지 식 재 산 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1 개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한도 축소

□ 개정 이유

-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하여 개인당 연간 20건에 대하여 출원료 70% 감면, 20건 초과분에 대하여 30% 감면 중
 - ※ 19세 이상 30세미만, 65세 이상은 연간 20건에 85%감면, 이후 30% 감면
- 다만, 심사청구료·등록료에 대하여는 연간 한도 없이 감면 중
- (문제점) 연간 20건의 출원에 큰 감면혜택(85·70%)이 제공될 뿐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대량출원까지 30% 감면 혜택 적용
 - (특허) 전년도 연간대비 올해 상반기 개인 특허 출원이 10건 초과 구간 모두에서 100%이상 상승하는 등 다출원인 급증
 - ※ '26년 上 10건초과 개인출원인 307명('25년 전체 192명), 100건초과 13명, 1000건초과 2명
 - (실용·디자인)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26년 상반기 개인 출원 급증 현상은 보이지 않으나, 7월 실용신안 대량출원인 등장^{*}
 - ※ 26년 7월에만 555건 출원한 신규 출원인 등장
 - (심사청구) AI를 활용한 대량 출원 증가에 따라 심사청구 또한 증가하여 심사 청구량 증가에 따른 심사대기기간 지연 예상
 - ※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전체 심사청구 증가율은 16%, 개인출원으로 한정하면 53%
- 개인 발명자의 지식재산 창출 기회보장을 위한 감면 혜택이 AI를 활용한 대량 출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정책 재조정 필요

□ 개정 내용

- (출원료) 감면(85·70%)횟수 축소(20건→10건) 및 30% 감면 혜택 삭제
 - 개인당 연간 특허 평균출원수('25년 1.8건) 등을 고려해 개인별 연 20건의 감면횟수^{*}를 축소(20건→10건)하고, 30%감면도 삭제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심사청구료) 감면(85·70%)횟수 신설(10건)
 - 개인 출원인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 감면건수를 현행 무제한에서 출원료 감면 건수와 동일한 10건으로 제한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5]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감경 대상		감경률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생략	생략
1. 개인	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100분의 85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	생략	생략
	나. 65세 이상인 사람	↓ (출원료, 심사청구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10건)		
	다. 가목 및 나목의 사람을 제외한 개 인	100분의 70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 ↓ (출원료, 심사청구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10건)		
2.-8. 생략				

비고

비고

1-2. 생략

3. 개인(별표 7 제1호에 따른 개인은 제외한다)의 권리유형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연간 감경 건수를 산정할 때 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하며, **출원 건수가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권리에 대한 출원인 경우 출원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3. 개인(별표 7 제1호에 따른 개인은 제외한다)의 권리유형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연간 감경 건수를 산정할 때 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 개정 효과

- AI를 활용한 출원 급증으로 인한 방식 및 실체 심사대기기간 지연 예방

□ 시행 시기 및 적용례

- (시행) 2027.1.1.
- (적용례) 시행일 이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출원한 건부터 적용

2 특허분석을 수행한 기술을 출원시 지식재산 포인트 부여

□ 개정 이유

- R&D 성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한 특허분석 수행을 민간에서 활성화하도록 인센티브 마련 필요

□ 개정 내용

-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출원한 경우에 대한 지식재산 포인트 항목 신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 2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사용 및 환수)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사용 및 환수)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①항 단서규정 및 1-3호 생략	
<신설>	<u>4.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하여 특허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u>

□ 개정 효과

- 자체인력 부족으로 특허분석을 진단기관에 의뢰하는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의 비용부담 경감 예상

□ 시행 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26년 12월 28일
- (적용례) 시행일부터 출원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적용

3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관련한 회복금액 개정

□ 개정 이유

-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가 포기간주 또는 소멸된 경우 ‘고의’가 아니라면 ‘정액’을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허법·디자인보호법 개정 및 공포

- (현행) 권리가 소멸된 경우 정당한 사유 소멸 부터 2개월~추납 만료일로 부터 1년 또는 조건 없이 추납 만료일로부터 3개월내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권리회복을 신청**
- (개정안) 추납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회복신청

※ 등록료 납부 체계

정상납부(3개월)	⇒	추가납부(6개월)	⇒	① 정당한 사유 소멸 부터 2개월~추납 만료일 1년 ② 사유불문 추가납부만료일로부터 3개월 → 고의가 아닌 경우 1년 이내
등록료		등록료 + 가산료(등록료의 3~18%)		① 등록료, ②등록료의 2배 → 등록료+회복료(정액)

→ 이에 기존 납부방식을 대신하여 미납 등록료 + 권리별 정액 회복료를 납부하도록 징수규칙 개정 필요

□ 개정 내용

- (회복료 정액) 요건 완화로 인한 제도 남용 방지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특허 100만원, 실용·디자인 20만원*으로 회복수수료를 정함
 ※ 권리 취득에 소요되는 평균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의 합과 유사한 수준
- (감면규정) 특허료·등록료 감면규정을 회복료에도 동일하게 적용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⑨ (생략) ⑩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려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특허권 회복의 경우: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실용신안권 회복의 경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디자인권 회복의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포기된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허료,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1. 특허권 회복수수료의 경우: 100만원 2. 실용신안권 회복수수료의 경우: 20만원 3. 디자인권 회복수수료의 경우: 20만원
⑪ ~ ⑳ (생략)	⑪ ~ ⑳ (현행과 같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5 개정(안) >

현 행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감경대상 1-8 생략

감경률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등록료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청구료

개 정 안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

(현행과 동일)

감경률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및 그 미납에 따른 회복수수료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등록료 및 그 미납에 따른 회복 수수료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청구료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 개정 효과

- 권리 회복요건 완화 및 회복 신청 기간 완화에 따른 법 개정안 시행시 적용할 회복 등록료의 합리적 설정
- 회복료를 정액으로 정하여 납부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개인·중소기업 등에는 등록료 감면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 시행 시기 및 적용례

- (시행) 2027년 3월 16일
- (적용) 개정규정 시행 이후 추가 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되는 건 부터 적용

4 한시적 감면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 개정 이유

- 질권의 설정등록료, 이전등록료, 특허료·등록료의 한시적 감면규정 만료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필요
 - 금융기관의 IP담보대출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등록 비용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의 자금 조달 확대 필요
 - IP담보대출 차주기업의 채무불이행 후 매입한 특허권(담보물)을 매각·라이선싱 하여야 하나, 권리 유지에 있어 특허료 등 부담 과중
 - ※ 특허권 매입 후 매각·라이선싱까지 약 2년이 소요되어 연차료 납부 부담 발생
 - ※ (참고)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취득세·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지식재산 포인트 중 중소기업·개인에 적용되는 항목의 한시적 부여규정 만료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필요
 - 중소기업 등에 특허료 지불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특허 창출금액에 따라 부여하여 특허창출 촉진 필요

□ 개정 내용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록시 다수(6건 초과) 지식재산권 공동담보에 대한 질권 설정 등록료 감면 기간 연장((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 2030년 12월 31일)
- 발명진흥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특허료·등록료 한시적 감면규정 기간 연장((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 2030년 12월 31일)
-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 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사용 및 환수)의 제2호의 시행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 2029년 12월 31일)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 제5조, 제7조 2 >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② 3의2.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u>2026년 12월 31일</u> 까지 공동담보인 특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② 3의2.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u>다만, 2030년 12월 31일까지</u> 공동담보인 특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② 3의2.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공동담보인 실용신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② 3의2.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u>2030년 12월 31일까지</u> 공동담보인 실용신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② 3의2.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공동담보인 디자인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② 3의2.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u>2030년 12월 31일까지</u> 공동담보인 디자인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② 6의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상표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② 6의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u>2030년 12월 31일까지</u> 공동담보인 상표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현행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사용 및 환수)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개정 2018.4.6, 2019.7.9, 2021.2.15, 2022.2.18, 2023.2.3>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모든 금액의 연간 납부 총액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개인 또는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허출원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료

나.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및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

다.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3. <생략>

개정안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사용 및 환수)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개정 2018.4.6, 2019.7.9, 2021.2.15, 2022.2.18., 2023.2.3.>

(현행과 같음)

[별표 6]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감면대상		감면을	감면기간
1. 생략			
2.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발명진흥법」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	면제	<u>2026년 12월 31일까지</u> <u>신청서를 제출한 건</u> ↓ <u>2030년 12월 31일까지</u> <u>신청서를 제출한 건</u>
3. 특허료, 등록료	가. 나. (생략)		
	다. 「발명진흥법」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	면제	납입개시일이 <u>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건</u> ↓ 납입개시일이 <u>2030년 12월 31일까지인 건</u>

비고 (생략)

□ 개정 효과

-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질권 설정등록료의 부담을 줄여 **침체중인 IP담보대출 규모 확대 및 IP금융 활성화**
- 매입한 특허의 수요 발굴 시 관련 수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어 매각·라이선싱 등 활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
- 중소기업 등의 특허창출 활동 장려를 위한 근거조항의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정책목표 달성 기대

□ 시행 시기 및 적용례

- (시행) 2027년 1월 1일
- (적용) 이 규정은 기존 규정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일몰기간인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해당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봄

5 부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 2 제4호의 개정규정 : 2026년 12월 28일
2. 제8조제10항, [별표5]의 표의 제목을 개정하는 규정 : 2027년 3월 16일

제2조(포인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출원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0항, 별표5의 표제목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추가 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되는 건 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인 출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감면한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5의 개인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감면한도 규정 및 비고3의 개정 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출원한 건부터 적용하며, 연간감경건수는 신청순서대로 산정한다.

제5조(회복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제10항, 별표5의 표제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개인 출원인의 심사청구료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5의 개인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한도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전에 출원된 건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